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환경관리실장 신동우)

가. 개정이유

- 여미지 식물원의 운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6. 7. 1 인상 이후 그동안 한번도 인상된 사례가 없는 입장료를 제주지역 유사 관광시설의 요금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일부 인상하고,
- 입장료에 부과해 온 제주도 관광진흥 부가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짐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골자

- 여미지 식물원의 입장료를 제주지역의 유사한 관광시설 요금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
 - 일 반 5,000원 → 6,000원,
 - 청소년·군경 3,800원 → 4,500원,
 - 노인·어린이 2,500원 → 3,000원으로 인상하고
-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공급가액의 2%를 제주도에 납부해온 관광진흥 부가금이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용훈)

- 제주관광 식물원 여미지의 입장료 인상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검토한바,
- 여미지식물원의 입장료는 삼풍에서 인수시점인 '96. 7. 1부터 적용된 요금으로 그 동안 주변관광시설의 요금수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. 그 예로 주변 유사한 식물원인 분재예술원의 경우 입장료 7,0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여미지식물원은 5,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2,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, 대부분의 주변관광시설이 금년도에 입장료를 12.5%~66.7%까지 인상하였음.
- 주변 관광시설과의 요금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특히 여미지식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향상과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입장료의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여미지운영에 관한조례 별표 제1호 입장료란의 “관광진흥부가금은 공급가액의 2%임”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제41조의 관광진흥부가금 과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여야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입장료

구 분		정 수 기 준	금 액 (원)
개인	일 반	19세 이상 64세 이하	6,000
	청 소년 · 군 경	청소년 : 14세 이상 18세 이하 군 경 : 하사관 이하 군인, 의경 및 전투경찰	4,500
	노 인	65세 이상	3,000
	어린이	4세 이상 13세 이하	3,000
단체	일 반	19세 이상 64세 이하	4,800
	청 소년 · 군 경	청소년 : 14세 이상 18세 이하 군 경 : 하사관 이하 군인, 의경 및 전투경찰	3,700
	노 인	65세 이상	2,400
	어린이	4세 이상 13세 이하	2,400

※ 비 고

- 제주도민은 신분증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요금의 50%를 감면함.
- 단체는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7
------	----

2002년 12월 일
문화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11월 5일, 서울특별시 교육감
-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(2002.12.26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기호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교육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한시기구 교육정보화추진팀과 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한시정원 감축 : △22명(총 정원 7,346명 → 7,324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병국)

-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한시기구 교육정보화추진팀과 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. 12.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됨.